**이 양식의 목적**

이 양식은 당신의 신분이 비이민신분중의 하나이며, 체류의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의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민귀화국에 신청하기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도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1 또는 M-1 비이민 학생 비자를 복원할 때도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초기증거**

미국내의 비이민자들은 이 지침에서 "신청할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 양식을 사용하여 체류연장 또는 신분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중신청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들도 공동 신청자로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모두가 같은 신분이거나 같이 변경된 신분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양식 I-94, 비이민 도착/출발기록**

양식 I-539를 제출할 때는 신청서에 포함되는 사람마다 양식 I-94의 원본이나 복사한 전후 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와 양식 I-94의 원본이나 필요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양식 I-102, 최초 비이민 도착/출발 양식/대체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는 비이민 신분 체류기간중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양식 I-539를 접수시킬때, 여권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양식과 함께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증거**

이 지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 신분의 구분**

이 양식은 다음 알파벳트 순으로 열거된 비이민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신분, 대사, 공사, 직업외교관**과 그의 직계가족.

각자에 대한 양식 I-94의 전후면의 사본 과 양식 I-566, 국무부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A 신분으로 또는 A에서 G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정부부처간의 개인기록, 또는 NATO 가족 취업 허가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주의**: A-1 또는 A-2 비이민자는 양식 I-539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A-3 신분, A 신분 비이민자의 시종자 또는 봉사자** 그리도 A-3의 직계 가족

신청서에 포함된 사람들 각자에 대한 양식 I-94의 전후면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고용주의 I-94 또는 A 신분을 입증하는 허가 통지서
- 당신의 직책을 기술하고, 당신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의사와 당신의 미국출발계획을 진술하는 고용주의 편지 원본. 그리고
- 국무부가 확인한 양식 I-566의 원본, 당신의 고용주의 신분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B-1, 사업 방문자 또는 B-2 관광 방문자.**

연장/변경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포함되는 각자의 양식 I-94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추가해서 다음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의 이유
- 왜 연장이 일시적이라는 이유, 미국을 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포함해야 함.
- 연장이 당신의 외국 취업 또는 거주에 끼칠 수 있는 영향

***E 신분, 조약 무역인 또는 투자인의 가족**

E 신분자의 가족으로 신분 연장/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 신분을 위해서 제출하는 양식 I-129, 외국인 근로자 진정서, 또는 그런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임을 보여주는 접수증의 사본,

- 신청자가 신청서의 신청기간에 이미 신분이 허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I-94나 허가통지서의 사본
- 친척관계 증명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

**주의:** 고용주나 투자인은 양식 I-129를 사용하여 고용인, 잠재적 고용인 또는 투자인의 E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 고용인의 가족은 양식 I-129가 아닌 본 양식을 사용하여 연장/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F-1, 학생신분**

F-1으로의 신분 변경 또는 F-1 학생신분 복원 신청 때는, 신청서에 포함된 사람들의 I-94 원본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공부를 하게 될 학교에서 발행한 양식 I-20 (비이민 학생자격 확인서)의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복원을 요청할 때는,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F-1의 연장:**
연장 신청 때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시오. 연장에 관한 정보는 소속학교의 담당관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F-1의 복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야만 F-1비자의 복원이 가능합니다.
- 신분위반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복원을 못하면 심한 곤란에 처하게 됨
- 풀 코스를 이수하고 있거나 할 것임
- 허가 없이는 취업을 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 현재 제적과정에 있지 않음.

***G 신분, 외국정부의 지정된 주재대표 및 그의 가족**
신청에 포함된 각자의 양식 I-94의 전후면 사본 과 국무성에서 신분자격을 확인한 양식 I-566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G-1에서부터 G-4에 해당하는 비이민자는 양식 I-539을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음.

**G-5 신분, G 비이민의 종사자 또는 봉사자 및 그의 직계 가족**
신청에 포함된 각자의 양식 I-94의 전후 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또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 고용주의 양식 I-94 또는 G 신분을 증명하는 허가통지서
-당신의 직책과 직접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신청자 고용주의 편지 원본, 미국을 떠날 때 필요한 계획내용, 그리고
- 신청자의 고용주가 계속 신분인정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무부의 확인서 양식 I-566의 원본.

**H 신분, 임시 근로자의 가족**
H 신분 임시 근로자인 고용인의 가족으로서 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제출할 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고용인을 위해서 제출된 양식 I-129이나 진정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이라는 서류 접수증;
-고용인의 양식 I-94의 사본이나 그 사람이 이미 신청자의 신청기간동안 신분허가를 받았다는 허가통지서와
-친척관계의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
**주의:** 고용주가 양식 I-129을 사용하여 고용인이나 잠재적 고용인의 H 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용인들의 가족은 양식 I-129가 아닌, 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J-1 신분, 교환 방문자**
J-1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할 때는 초청후원인이 발행한 양식 IAP-66, 교환방문자 신분자격 확인서의 원본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 I-94의 원본과 신청서에 포함된 각자의 양식 I-94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교환방문자로서 의료수업 또는 훈련이 목적일 때는 신청자가 적절한 면제허가를 받지 않은 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J-1 신분은 외국거주기간의 요건이 있을 때 이 요건의 면제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신분변경을 A나 G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J-1의 연장:**
연장을 원하면, 방문계획의 담당책임자와 연락하여 이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시오.
**J-1의 복원:**
J-1 교환방문자로 복원을 원할 때는 국무부 교육문화국에 그러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문계획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알아보시오.

**L 신분, 회사간 전속 전근자**
L 신분, 회사 전근전속자인 고용인의 가족으로서 신분 연장/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 고용인에 발행된 양식 I-129 또는 진정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이라는 신청서 접수증의 사본
-고용인의 양식 I-94의 사본 또는 당신이 신청하려는 해당 기간동안 그 고용인이 이미 신분승인을 받았다는 허가 통지서
- 친척관계의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
**주의:** 고용인 또는 잠재적 고용인의 L 신분을 연장/변경키 위한 신청을 할 때는 고용주가 양식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용인의 가족은 I-129가 아닌 본 양식으로 신분 연장/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M-1 신분, 직업 또는 비 학업 학생**
M-1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M-1 학생 신분의 복원을 요청할 때는 양식 I-94의 원본과 함께 신청에 포함된 각자에 대한 양식 !-94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니게 될 학교에서 발행한 양식 I-20의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연장/변경 또는 복원을 신청할 때는 학비와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M-1의 복원:**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M-1 학생신분의 복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반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복원을 못하면 심한 곤란에 처하게 됨
- 풀 코스를 이수하고 있음
-허가 없이 취업한 적이 없음, 그리고
-현재 제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음.
**주의**; 당신이 M-1 학생이면,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M-1 학생으로 받은 훈련이 H 신분획득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H 신분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H 신분 자격을 받기 위한 훈련을 위한 M-1 신분으로의 변경은 안될수 있습니다.

*** N-1 또는 N-2 신분, 특수 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이민 및 국적법 (I&NA) 101(a)(27)(I)에 의함.
양식 I094의 전후면 사본과 함께 특수이민 영주권 카드와 친척관계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신분, 비상한 능력소지자 또는 성취자 의 가족**
O 신분 비이민으로 분류된 고용인의 가족으로 신분연장/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그 고용인을 위해 제출되는 양식 I-129 또는 그 사람이 진정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계류중이라는 접수증의 사본
-고용인의 양식 I-94의 사본 또는 신청하려는 해당 기간동안 그 사람이 이미 신분 허락을 받았다는 허가통지서
-친척관계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
**주의**: 고용인이나 잠재적 고용인의 O 신분 연장/변경 신청은 고용주가 양식 I-129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고용인들의 가족은 연장/변경 신청을 할 때, 양식 I-129가 아닌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P 신분, 예술가, 체육가 및 연예인**

P 신분 비이민으로 분류된 고용인의 가족으로 연장/변경을 신청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그 고용인을 위해서 제출된 양식 I-129 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민국에서 계류중이라는 접수증의 사본
- 고용인의 양식 I-94 또는 신청 해당 기간 동안 이미 그 사람이 신분허가를 받았다는 허가통지서
- 친척관계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 증명서)
**주의**: 고용인이나 잠재적 고용인의 P 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양식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용인의 가족은 연장/변경 신청을 위해서 양식 I-129가 아닌 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R 신분, 종교관계 종사자의 가족**

R 신분 비이민자로 분류된 고용인의 가족으로서 연장/변경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공용인을 위한 양식 I-129 또는 진정서가 이미 제출되어 이민국에 계류중이라는 접수증의 사본
-고용인의 양식 I-94의 사본 또는 당신이 신청하려는 해당기간 동안 고용주가 이미 신분허가를 받았다는 허가 통지서
-친척관계의 증거 (예: 출생증명 또는 결혼증명서)

***TN 비이민의 TD 가족**

TN 비이민은 카나다나 멕시코의 시민으로 실업인으로 미국에 와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따라 전문적인 수준의 실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TN 비이민의 가족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는 TD 비이민으로 지정됩니다. TD 비이민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양식 I-539는 TD 비이민이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 또는 신청자가 비이민 신분에서 TD 분류로 변경신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 TD 가족이 TN 전문인과 동시에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는 TN 전문인을 위한 양식 I-129과 함께 양식 I-539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비이민 신분에서 TD로 변경 신청하고 동시에 전문인이 비이민 신분에서 TN으로 변경신청을 할 때 사용됩니다.
- 만약 신청자가 TN 전문인과 동시에 체류연장 신청을 할 때 또는 비이민 신분자격을 얻은 후에 비이민 신분에서 TD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신청자가 TN의 양식 I-94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TN 해당자가 유효한 비이민 신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V 신분,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에 실제로 있으면서 최초의 신분을 V 신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현재의 V 신분 체류연장을 원할 때는 양식 I-539를 사용하시오.
신청자들은 이 양식의 지침과 양식 I-539의 V신분 비이민신청 지침인 부록 A를 따라야 합니다. 부록은 추가 정보와 V 신분의 신청장소를 알려 줍니다.

**V 비 이민들을 위한 공고**
2000년 12월 21일 서명된 합법이민 가족 공정법 (LIFE)에 따라 새로운 비자가 생겼습니다. 이 비이민신분은 해당자들이 영주권을 얻으려고 대기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국으로 또는 미국으로부터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V 비자의 발급대상 자격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야 합니다. *당신의 합법적인 배우자가 2000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당신을 위해서 외국인친척의 진정서, 양식 I-130를 반드시 체출 했어야 함. *당신을 위한 양식 I-130가 제출된 이후 최소 3년을 기다렸어야 함.
당신이 상기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미혼자녀(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V 비자 소유자는 이민 비자를 얻을 수 있게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V 비자 소유자들은 양식 I-765 취업허가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승인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고**: V 신분에 있는 사람이 180일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한 후 미국에서 출발할 경우, 불법체류 이유에 의한 입국불허 (3년 또는 10년간 입국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비자 면제 계획으로 입국하였거나 현재의 신분이 아래에 해당되면,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과 중(C)이거나 무비자 통과 (TWOV) 중인 외국인 *승무원 (D) *약혼자 (e) 또는 약혼자의 부양가족 (e) (K)(1) 또는 ((K)(2)
미국시민의 약혼자 (K-3) 와 그의 자녀 (K-4)는 LIFE 법에 의해서 그런 신분이 주어진 경우, 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외:** K-3와 K-4 비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출되는 양식 I-130의 처리 기간 중에 신분조정완료 때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어떤 비이민자 (A부터 V까지)도 K-3나 K-4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작성지침**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타자로 또는 검은 잉크로 인쇄체로 쓰시오.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N/A로 표시하시오. 만약 답이 "없음"이면 그렇게 쓰시오. 답변제공에 지면이 더 필요하면, 종이에 당신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 번호 (A#)를 있을 경우에 써 넣고 질문 번호를 표시하시오. 신청서는 반드시 최초에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적절히 서명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첨부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를 서명할수 있습니다.
***사본*** 본 지침에 따라 이 신청을 할 때 서류의 사본제출이 허용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하면, 그것은 신청서류철에 보관될 것입니다.
***번역*** 외국어로 된 문서는 꼭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자는 번역이 완벽하며 자신이 외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능력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간 및 장소**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은 현재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기한만료 전 최소 45일 또는 신분변경의 필요를 결정한후 될 수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만료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상황에서만 허용될수 있음. *지연이 불가부득한 사정 때문일 경우 *지연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분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아직도 선의의 비이민자인 경우 *제거절차 중에 있지 않은 경우
V 비이민 신청자인 경우는 양식 I-539의 부록 A의 지침서에 쓰인 장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F-1 또는 M-1 학생신분의 복원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의 이민국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오.
TD의 체류연장이나 TD로의 변경신청은 신청성류를 **UNINS Nebraska Service Center, P.O. Box 87539, Lincoln, NE 68501-7539**로 우송하면 됩니다.
E 가족으로 체류연장을 원할 때, 거주지가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the U.S. Virgin Islands, Vermont, Virginia or West Virginia 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UNINS Texas Service Center, P.O. Box 851182, Mesquite, TX 75185-1182**로 우송하면 됩니다.
E 가족으로 체류연장신청을 원하며 거주지가 미국의 다른 지역일 경우는 신청서를 **UNIN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Box 10539, Laguna Niguel, CA 92607-1053**으로 우송하면 됩니다.
이밖에 모든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의 미국내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 써비스 껜터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거주지가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Main,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the U.S. Virgin Islands, Vermont, Virginia 또는 West Virginia인 경우 신청서를 **UNIN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로 우송시오.
Alabama, Arkansas,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ew Mexico, North Carolina, Oklahoma, South Carolina, Tenessee 또는 Texas에 거주하면,**UNINS Texas Service Center, Box 851182, Mesquite, TX 75185-1182**로 신청서를 우송하시오.
Arizona, California, Guam, Hawaii 또는 Nevada 거주자는 **USIN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539, Laguna Niguel, CA 92607-1053**으로 우송함.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 할때는 **USINS Nebraska Service Center, P.O.Box 87539, Lincoln, NE 68501-7539**로 신청서를 우송하면 됩니다.

**수수료**

이 지침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부 A와 G 비이민자들을 제외하고 신청자의 수수료는 $120.00입니다. 수수료는 액수가 정확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현찰은 보내지 마시오.

모든 수표와 환수표는 미국내의 은행 또는 다른 기관의 구좌에서 쓴것이어야 하며, 미국 돈으로 지불돼야 함.

수표나 환수표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앞으로 끊어야 하며, 예외는:

-Guam의 거주자가 Guam에서 신청할 때는 "Treasurer, Guam" 앞으로,

-U.S. Virgin Islands의 거주자가 U.S. Virgin Islands에 신청할 때는 "Commissioner of Finance of the Virgin Islands" 앞으로 끊어야 합니다.

수표는 입금이 가능해야 접수됩니다. 입금불능 수표는 신청을 무효로 만들며, 발행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30.00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처리정보**

***접수*** 신청서의 서명이 안되었거나 수수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결함이라는 통지와 함께 접수가 거부됩니다. 결함을 시정하여 재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완전 접수할 때까지 적절한 제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최초처리***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양식을 완전히 쓰지 않거나 필요한 최초의 증빙서류 없이 제출되면, 신청 자격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결될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또는 면담의 요청*** 이민국에서 추가정보나 증거를 요청하거나 면담을 위한 이민국 출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이상 불필요하면 원본을 반납해 줍니다.

***결정*** 최초 신분의 연장, 변경 및 복원은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벌칙** 당신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숨길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당신이 추구하는 혜택이 거부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이민관련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법에 정해진 혹독한 벌금부과 및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정보보호법 공고**

우리가 이 양식에서 관련정보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신청자가 원하는 이민혜택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청의 법적 근거는 8 U.S.C.1184 와 1258 임. 이 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이 정보나 어떠한 증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지연 또는 부결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양식**

이민법규와 절차에 대한 문의나 이민국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의 무료전화: **1-800-376-5283**으로 연락하거나 INS 인터넷 **www. ins.gov**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서류축소법 공고**

OMB(예산관리처)의 현재 유효한 통제번호가 없으면 정부기관은 정보수집을 실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정보수집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양식과 양식의 작성지침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정보제공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양식과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종종 어렵습니다. 이 양식을 쓰고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추정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과 양식을 이해하는데 10분, (2) 양식 작성에 10분, (3) 서류정리 및 출원에 25분; 합계 신청 당 45분임. 이 추정시간의 정확성 또는 이 양식을 보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PDI, 42541 I Street, N.W., Room 4043, Washington, D.C. 20536으로 서면연락 바랍니다. **이 주소로 작성된 신청서는 보내지 마시오.**

---

**우편 라벨 -- 신청자의 양식 I-94의 원본을 제출해야 할 때는 다음 우편 라벨을 써서 신청서류와 함께 이 쪽을 제출하시오.**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_____

번지 와 거리의 이름_____

시, 주, 우편 번호_____

신청자의 양식 I-94, 도착/출발 기록 첨부
허가된 신분의 연장/변경이 승인 되었음.